

🏠 지원 절차

- 주인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

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
기타 관계인이 신청

❗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.



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, 근로능력, 취업상태,
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,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

❗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
시·군·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
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❗ 소득·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
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📄 신청 서류



필수 신청서
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
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



구비 서류(필요 시)

-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-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- 사용대차 확인서
 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 -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
 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
- ❗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,
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

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

☎ 생계 급여

-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
-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.16% (4인가구 21만 3천원) 인상

구분	'23년	'24년	전년대비
1인	62만 3천원	71만 3천원	+9만원(+14.40%)
2인	103만 7천원	117만 8천원	+14만 1천원(+13.66%)
3인	133만원	150만 9천원	+17만 9천원(+13.40%)
4인	162만 1천원	183만 4천원	+21만 3천원(+13.16%)
5인	189만 9천원	214만 3천원	+24만 4천원(+12.82%)
6인	216만 8천원	243만 8천원	+27만원(+12.43%)

🏠 주거 급여

-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%에서 48%로 상향
-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 (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)

구분	1인가구/4급지 (수도권·광역·세종·특례시 외)	6인가구/1급지 (서울)
'23년	16만 4천원	62만 6천원
'24년	17만 8천원	64만 6천원
전년대비	+1만 4천원(+8.5%)	+2만원(+3.2%)

⚕️ 의료 급여

-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🎒 교육 급여

-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수준으로 상향하여 초·중·고 평균 11%인상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'23년	41만 5천원	58만 9천원	65만 4천원
'24년	46만 1천원	65만 4천원	72만 7천원
전년대비	+4만 6천원	+6만 5천원	+7만 3천원

🚗 자동차재산 기준

	2023년	2024년
다인 (6인 이상) · 다자녀 (3자녀 이상)	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▶ 일반재산 환산율 (4.17%) 적용	2,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▶ 일반재산 환산율 (4.17%) 적용
생업용 자동차	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▶ 자동차가액의 50%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(4.17%) 적용	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▶ 자동차가액 100% 재산 산정 제외

👤 청년 근로·사업소득 공제

- 청년 근로·사업소득 공제(40만원+30%)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
- 청소년 한부모(24세이하) 근로·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 +30%에서 60만원+30%로 확대